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중재규칙

SIAC 규칙

(제6차, 2016. 8. 1.)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중재규칙

제6차, 2016. 8. 1.

목차

제1조	적용과 해석범위	1
제2조	통지와 기간 산정	2
제3조	중재 신청	3
제4조	중재신청서에 대한 답변	4
제5조	신속절차	5
제6조	복수 계약	6
제7조	당사자의 추가	7
제8조	병합	9
제9조	중재인 수와 선정	12
제10조	단독중재인	12
제11조	3인 중재인	13
제12조	다수 당사자에 의한 중재인 선정	13
제13조	중재인 자격	13
제14조	중재인 기피	14
제15조	중재인 기피신청서	15
제16조	중재인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16
제17조	중재인 교체	16
제18조	중재인 교체 시 심리절차 반복 여부	17
제19조	중재 진행	17
제20조	당사자의 서면 제출	18
제21조	중재지	19

목차

제22조	중재언어	20
제23조	당사자의 대리인	20
제24조	심리	20
제25조	증인	21
제26조	중재판정부가 지정한 전문가	21
제27조	중재판정부의 기타 권한	22
제28조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23
제29조	청구와 항변의 조기 기각	24
제30조	임시처분 및 긴급임시처분	25
제31조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 우호적 중재인(amicable compositeur), 형평과 선(ex aequo et bono)	25
제32조	중재판정	26
제33조	중재판정의 정정, 해석 및 추가	28
제34조	수수료 및 예납금	28
제35조	중재비용	30
제36조	중재판정부 수수료 및 경비	30
제37조	당사자의 법률비용 및 기타 비용	30
제38조	면책	31
제39조	비밀유지	31
제40조	중재법원장과 중재법원 및 사무국의 결정	32
제41조	일반 조항	32
별지 1	긴급중재인	34
	수수료 일람표	37
	기타 수수료	39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표준중재조항	40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신속절차 표준중재조항	42
	SIAC-SIMC 중재-조정-중재 프로토콜	44
	싱가포르 중재-조정-중재 조항	47
	결제정보	48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중재규칙

SIAC 규칙

제6차, 2016. 8. 1.

1 적용과 해석범위

1.1 당사자들이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의 중재에 분쟁을 회부하거나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를 하기로 합의한 경우, 당사자 간에 동 기관이 진행·관리하는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2 이 규칙은 2016년 8월 1일부터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효력발생일 당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되는 모든 중재절차에 적용된다.

1.3 이 규칙에서

“중재판정(Award)”은 부분판정, 최종판정 또는 긴급중재인의 판정을 포함한다.

“중재법원 내 위원회(Committee of the Court)”는 중재법원장이 선정한 2인 또는 그 이상의 중재법원 내 위원(중재법원장 포함 가능)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중재법원(Court)”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의 중재법원을 말하며, 중재법원 내 위원회를 포함한다.

“긴급중재인(Emergency Arbitrator)”은 별지 1의 3문단에 따라 선정된 중재인을 말한다.

“실무지침(Practice Notes)”은 사무총장이 이 규칙을 보충, 규제 또는 시행하기 위하여 때때로 공표하는 지침을 말한다.

“중재법원장(President)”은 중재법원의 원장을 말하며, 부원장(Vice President)과 사무총장(Registrar)을 포함한다.

“사무총장(Registrar)”은 중재법원의 사무총장을 말하며 부사무총장(Deputy Registrar)을 포함한다.

“규칙(Rules)”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의 제6차 중재규칙(2016년 8월 1일 발효)을 말한다.

“SIAC”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를 말한다.

“중재판정부(Tribunal)”는 1인 중재인 또는 2인 이상 선정된 경우 모든 중재인들을 포함한다.

모든 대명사는 성 중립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모든 단수 명사는 문맥상 적절한 경우 당해 명사의 복수형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통지와 기간 산정

- 2.1 이 규칙과 관련된 모든 통지, 교신 또는 제안은 서면으로 한다. 모든 통지, 교신 또는 제안은 등기우편, 택배, 모든 종류의 전자 교신(이메일과 팩스 포함) 또는 송신기록이 남는 다른 통신수단으로 할 수 있다. 모든 통지, 교신 또는 제안은 (i) 수신인 또는 수신인의 수권대리인에게 송달되거나, (ii) 수신인의 거주지나 직장 또는 수신인이 지정한 주소로 송달되거나, 혹은 (iii) 당사자 간에 합의한 주소나 (iv) 당사자 간에 이전 거래에서 사용한 주소 또는 (v)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 후에도 위에 열거된 수령지를 확인할 수 없어 수신인의 가장 최근에 알려진 거주지나 직장으로 송달된 경우에 수령된 것으로 간주한다.
- 2.2 모든 통지, 교신 또는 제안은 제2.1조에 따라 송달된 일자에 수령된 것으로 간주한다.
- 2.3 이 규칙에 의한 기간을 산정할 때는 통지, 교신 또는 제안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사무총장이나 중재판정부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 규칙에 의한 기간은 싱가포르 표준시(GMT+8)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2.4 이 규칙에 의한 기간은 수령지의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 규칙에 의한 기간의 말일이 제2.1조에서 정한 수령지의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이후 최초 영업일까지 해당 기간을 연장한다.
- 2.5 당사자들은 중재 절차와 관련하여 통지, 교신 또는 제안한 모든 내용을 사무국에 사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2.6 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무국은 이 규칙이 정한 기간을 언제든지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3 중재 신청

- 3.1 중재절차를 개시하고자 하는 당사자(이하 “신청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중재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a. 회부할 분쟁에 대한 중재 신청
 - b. 중재 당사자들과 그 대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알고 있는 경우)
 - c. 원용한 중재합의문과 그 사본
 - d. 회부할 분쟁과 관련된 계약서(예: 투자조약서)와 가능한 경우 그 사본
 - e. 분쟁의 성격과 관련 정황에 관한 간략한 기술(신청 취지와 가능한 경우 청구금액 최초 산정 결과도 명시)
 - f. 중재절차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합의한 사항 또는 신청인이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기술
 - g. 신청인이 제안하는 중재인 수(중재합의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 h.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중재합의문에 중재인이 3인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명한 중재인 1인, 중재합의문에 중재인이 1인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안하는 중재인 1인

- i.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규범에 관한 의견
 - j.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에 관한 의견
 - k. 이 규칙에 따른 접수 수수료 납입
- 3.2 중재신청서에는 제20.2조에 언급된 준비서면(Statement of Claim)도 포함시킬 수 있다.
- 3.3 중재절차 개시일은 ‘완성된’ 중재신청서가 사무국에 접수된 일자로 한다. 명확히 하자면, 완성된 중재신청서란 제3.1조와 제6.1조(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거나 사무국에서 해당 요건의 상당 부분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중재신청서를 말한다. 중재절차가 개시된 경우 SIAC는 이에 관하여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4 신청인은 사무국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그 사본을 피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그 송달 방법과 일자를 명시하여 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중재신청서에 대한 답변

- 4.1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서를 수령한 날의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답변서(Response)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a.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인정 여부(가능한 경우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는 주장 포함)
 - b. 반대청구의 성격과 관련 정황에 관한 간략한 기술(반대청구 취지와 가능한 경우 반대청구청구금액 최초 산정 결과도 명시)
 - c. 제3.1조에 의한 중재신청서에 기술된 사항이나 동 조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에 관한 의견
 - d.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중재합의문에 중재인이 3인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지명한 중재인 1인, 중재합의문에 중재인이 1인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명한 중재인 1인에 관한 의견 또는 반대 제안
 - e. 반대청구를 위한 이 규칙에 따른 접수 수수료 납입

- 4.2 답변서에는 제20.3조에 언급된 답변서면(Statement of Defence)과 제20.4조에 언급된 반대 준비서면(Statement of Counterclaim)도 포함시킬 수 있다
- 4.3 피신청인은 사무국에 답변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그 사본을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그 송부 방법 및 일자를 명시하여 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5 신속절차

- 5.1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 일방당사자는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 이 규칙이 정하고 있는 신속절차에 따라 중재가 진행되도록 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 a. 청구금액과 반대청구청구금액 및 상계항변금액을 합한 총 분쟁금액이 싱가포르화 6,00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b. 당사자 간에 신속절차에 따라 중재가 진행되도록 합의한 경우
 - c. 극히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건인 경우

본 조의 신속절차에 따른 중재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사무국에 신속절차 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그 사본을 상대방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그 송달 방법과 일자를 명시하여 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 5.2 일방당사자가 제5.1조에 의한 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 중재법원장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신속절차에 따라 중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신속절차가 진행된다.
 - a. 사무국이 이 규칙에 따른 시한의 단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b. 중재법원장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해당 사건을 단독중재인에게 회부한다.
 - c. 중재판정부는 분쟁에 대해 서면 증거만을 근거로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구두변론을 듣는 것은 물론 모든 증인과 전문가 증인을 신문하기 위하여 심리도 열 것인지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d.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판정을 내려야 한다.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사무국이 기한을 연장한다.
 - e. 중재판정부는 판정이유를 당사자들이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합의하지 않는 한 최종 판정문에 요약하여 기재할 수 있다.
- 5.3 이 규칙에 의한 중재 진행에 합의한 당사자들은 제5조의 신속절차에 따라 중재가 진행될 경우에 중재합의문에 달리 규정되어 있더라도 제 5.2조의 원칙과 절차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5.4 일방당사자가 신속절차중지 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들이 각각 자신의 주장을 진술할 기회를 가진 후 중재판정부가 추가적으로 참작하여야 할 정보가 더 존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사무국과 상의하여 신속절차를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본 조에 의한 신속절차중지 신청을 승인하였더라도 해당 중재사건은 신속절차에 따라 중재를 진행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던 중재판정부가 계속 담당한다.

6 복수 계약

- 6.1 2개 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다수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청인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택할 수 있다.
- a. 원용하는 중재합의별로 각각의 중재신청서를 제출하고 그와 동시에 제8.1조에 따라 중재절차 병합 신청서를 제출함
 - b. 원용하는 각각의 중재합의와 해당 계약을 밝히고 제8.1 조의 중재절차 병합 조건이 어떻게 충족되어 있는지 기술하여 모든 중재합의에 대하여 단일 중재신청서를 제출함
- 이 경우 신청인은 각 중재합의마다 개별적인 중재절차를 신청함으로써 복수의 중재절차를 개시했던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본 호에 의한 중재신청서를 제출하면 제8.1조에 따라 그러한 복수의 중재절차를 병합하기 위한 신청을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6.2 신청인이 제6.1(a)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중재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무국은 병합 신청한 모든 중재절차에 대하여 이 규칙에 따른 단일접수 수수료 납입을 허용할 수 있다. 중재법원이 중재절차 병합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하할 경우, 신청인은 병합되지 않은 각 중재절차마다 이 규칙에 따른 접수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6.3 신청인이 제6.1(b)조에 따라 단일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중재법원이 중재 병합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하할 경우, 신청인은 병합되지 않은 각 중재절차마다 이 규칙에 따른 접수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7 당사자의 추가

- 7.1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 중재의 당사자 또는 비당사자는 1인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당사자(이하 “추가 당사자”)를 이 규칙에 의하여 계류 중인 중재절차의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다. 단,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 a. 추가 당사자가 중재합의문에 구속됨이 일응 명백한 경우
- b. 추가 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가 당사자 추가에 동의한 경우

- 7.2 제7.1조에 의한 당사자 추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a. 계류 중인 중재절차의 참조번호
- b. 추가 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와 대리인이 있는 경우 모든 대리인과 계류 중인 중재절차를 담당하기 위하여 지명 또는 선정된 모든 중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알고 있는 경우)
- c. 추가 당사자의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여부
- d. 제3.1(c)와 제3.1(d)조에 언급된 정보
- e. 제7.1(b)조에 따라 작성하는 신청서일 경우, 관련 합의 내용과 가능한 경우 그 사본
- f. 신청서 내용을 뒷받침하는 관련 사실과 법적 근거에 관한 간략한 기술

당사자 추가 신청서는 본 조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거나 사무국에서 해당 요건의 상당 부분을 충족한다고 인정할 때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당사자 추가 신청서가 완성된 경우, SIAC는 이에 관하여 추가 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7.3 제7.1조에 의한 당사자 추가 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비당사자는 당사자 추가 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함과 동시에 그 사본을 추가 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그 송달 방법과 일자를 명시하여 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 7.4 중재법원은 추가 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의 의견을 검토한 후 회부된 사건의 정황을 참작하여 제7.1조에 의한 당사자 추가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중재법원이 본 조에 따라 당사자 추가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러한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할권에 관한 문제를 향후에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 받지 않는다. 중재법원이 본 조에 따라 당사자 추가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하하는 경우, 당사자와 비당사자 모두 제7.8조에 따라 중재판정부에 당사자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다.
- 7.5 당사자 추가 신청이 제7.4조에 따라 승인된 경우, 추가 당사자에 관한 중재절차의 개시일은 필요한 조건이 다 갖춰진 당사자 추가 신청서가 접수된 일자로 한다.
- 7.6 당사자 추가 신청이 제7.4조에 따라 승인된 경우, 중재법원은 당사자 추가가 승인되기 전에 선정된 어떤 중재인이든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제9조부터 제12조가 적절히 적용되며 각 조의 적용 시기는 제7.4조에 의한 중재법원의 결정이 수령된 일자를 기점으로 한다.
- 7.7 중재법원이 제7.6조에 따라 중재인을 해임하였다도 해당 중재인의 해임 전 행위나 명령 또는 중재판정은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다.
- 7.8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후, 중재의 당사자 또는 비당사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계류 중인 중재절차의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으로 1인 혹은 그 이상의 추가 당사자를 포함시키기 위한 신청서를 중재판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단,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 a. 추가 당사자가 중재합의문에 구속됨이 일응 명백한 경우
 - b. 추가 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가 당사자 추가에 동의하는 경우.

본 조에 따라 중재판정부에 제출될 신청서는 적절한 경우에 사무국에

제출할 수도 있다.

- 7.9 제7.2조의 규정은 중재판정부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에 의거하여 제7.8조에 의한 당사자 추가 신청서에 준용한다.
- 7.10 중재판정부는 추가 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에게 각자의 주장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후에 회부된 사건의 정황을 참작하여 제7.8조에 의한 당사자 추가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본 조에 따라 당사자 추가 신청을 승인한 경우 그러한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할권에 관한 문제를 향후에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 받지 않는다.
- 7.11 당사자 추가 신청이 제7.10조에 따라 승인된 경우, 추가 당사자에 관한 중재절차의 개시일은 필요한 조건이 다 갖춰진 당사자 추가 신청서가 사정에 따라 중재판정부 또는 사무국에 접수된 일자로 한다.
- 7.12 당사자 추가 신청이 제7.4조 또는 제7.10조에 따라 승인된 경우, 중재인을 지명하지 않았거나 중재판정부 구성에 참여하지 않은 당사자는 중재인을 지명하거나 중재판정부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되, 제14조에 의한 중재인 기피신청권은 침해 받지 않는다.
- 7.13 당사자 추가 신청이 제7.4조 또는 제7.10조에 따라 승인된 경우, 추가된 신청이나 반대청구에 대하여서도 이 규칙에 따른 접수 수수료가 납입되어야 한다.

8 병합

- 8.1 병합을 구하는 중재절차에 있어서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 일방당사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계류 중인 2개 이상의 중재절차를 하나로 병합하기 위한 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다. 단,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 모든 당사자가 병합에 동의하는 경우
 - 중재절차에 있어 모든 청구가 동일한 중재합의문에 근거하는 경우
 - 중재합의문 간에 모순이 없으며, 분쟁이 (i) 동일한 법적 관계나 (ii) 원계약과 부수적인 계약(들)으로 구성된 계약서로부터

- 발생되거나 또는 (iii) 동일한 거래나 연속적인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
- 8.2 제8.1조에 의한 당사자 추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a. 병합 대상 중재절차들의 참조번호
 - b. 모든 당사자와 그 대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리고 병합 대상 중재절차들을 위하여 지명 또는 선정된 모든 중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알고 있는 경우)
 - c. 제3.1(c)와 제3.1(d)조에 언급된 정보
 - d. 제8.1(a)조에 따라 작성하는 신청서일 경우, 관련 합의 내용과 가능한 경우 그 사본
 - e. 신청서 내용을 뒷받침하는 관련 사실과 법적 근거에 관한 간략한 기술
- 8.3 제8.1조에 의한 당사자 추가 신청을 하는 당사자는 중재절차 병합 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함과 동시에 그 사본을 모든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그 송달 방법과 일자를 명시하여 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 8.4 중재법원은 모든 당사자의 의견을 검토한 후에 회부된 사건의 정황을 참작하여 제8.1조에 의한 중재절차 병합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중재법원이 본 조에 따른 중재절차 병합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할권에 관한 문제를 향후에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 받지 않는다. 중재법원이 본 조에 따른 중재절차 병합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하하는 경우, 어느 당사자이든 제8.7조에 따라 중재판정부에 중재절차 병합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다. 병합 승인이 나지 않은 중재절차는 모두 이 규칙에 따라 개별적인 중재절차로 존속한다.
- 8.5 중재법원이 제8.4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중재절차를 병합하기로 결정할 경우, 모든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거나 혹은 중재법원이 회부된 사건의 정황을 달리 참작하지 않는 한, 병합될 중재절차들은 사무국에 의하여 최초로 개시된 것으로 간주된 중재절차에 병합된다.

- 8.6 중재절차 병합 신청이 제8.4조에 따라 승인된 경우, 중재법원은 중재절차 병합이 승인되기 전에 선정된 모든 중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제9조부터 제12조가 적절히 적용되며 각 조의 적용 시기는 제8.4조에 의한 중재법원의 결정이 수령된 일자를 기점으로 한다.
- 8.7 병합을 구하는 중재절차에 있어서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후, 일방당사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계류 중인 2개 이상의 중재절차를 하나로 병합하기 위한 신청서를 중재판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단,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 a. 모든 당사자가 병합에 동의하는 경우
 - b. 중재절차에 있어 모든 청구들이 동일한 중재합의문에 근거하고, 각 중재절차를 심리하기 위하여 동일한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었거나 혹은 다른 중재절차에 있어서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 c. 관련 중재합의문 간에 모순이 없으며, 각 중재절차를 심리하기 위하여 동일한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었거나 혹은 다른 중재절차에 있어서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않았고, 분쟁이 (i) 동일한 법적 관계나 (ii) 원계약과 부수적인 계약(들)으로 구성된 계약들로부터 발생되거나 또는 (iii) 동일한 거래나 연속적인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경우
- 8.8 제8.2조의 규정은 중재판정부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에 의거하여 제8.7조에 의한 중재절차 병합 신청서에 준용한다.
- 8.9 중재판정부는 모든 당사자의 의견을 검토한 후 회부된 사건의 정황을 참작하여 제8.7조에 의한 중재절차 병합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본 조에 따른 중재절차 병합 신청을 승인하더라도 그러한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할권에 관한 문제를 향후에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 받지 않는다. 병합 승인이 나지 않은 중재절차는 모두 이 규칙에 따라 개별적인 중재절차로 존속한다.
- 8.10 중재절차 병합 신청이 제8.9조에 따라 승인된 경우, 중재법원은 중재절차 병합이 승인되기 전에 선정된 어떤 중재인이든 해임할 수 있다.
- 8.11 중재법원이 제8.6조 또는 제8.10조에 따라 중재인을 해임하였더라도 해당 중재인의 해임 전 행위나 명령 또는 중재판정은 그 효력은 그대로

유지한다.

- 8.12 중재절차 병합 신청이 제8.4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승인된 경우, 중재인을 지명하지 않았거나 중재판정부 구성에 참여하지 않은 당사자는 중재인을 지명하거나 중재판정부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되, 제14조에 의한 중재인 기피신청권은 침해 받지 않는다.

9 중재인 수와 선정

- 9.1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혹은 사무국이 당사자들의 제안을 충분히 참작한 결과 분쟁의 복잡성이나 분쟁금액 또는 분쟁과 관련된 기타 정황으로 인하여 3인의 중재인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에 따른 중재에는 단독중재인을 선정한다.
- 9.2 당사자들이 1인 이상의 당사자나 이미 선정된 중재인을 포함한 제3자가 중재인을 선정하는 것에 합의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이 규칙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9.3 당사자가 지명한 중재인과 이미 선정된 중재인을 포함한 제3자가 지명한 중재인 모두 중재법원장이 재량에 따라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 9.4 중재법원장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중재법원장이 이 규칙에 따라 내린 중재인 선정 결정은 최종적이며 이의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9.5 중재법원장은 일방당사자가 이미 제안 또는 추천한 중재인 후보자 중에서 중재인을 선정할 수도 있다.
- 9.6 각 중재인의 선정 조건은 이 규칙과 선정 당시 시행 중인 실무지침 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사무국이 정한다.

10 단독중재인

- 10.1 단독중재인이 선정되어야 할 경우, 일방당사자는 타방당사자에게 1인 혹은 그 이상의 중재인 후보자를 단독중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단독중재인 추천에 합의한 경우 제9.3조가 적용된다.

- 10.2 중재절차 개시일로부터 21일 이내 또는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하였거나 사무국이 정한 기간 이내에 당사자들이 단독중재인 추천에 합의하지 못하거나, 혹은 어느 때든지 일방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단독중재인은 중재법원장이 선정한다.

11 3인 중재인

- 11.1 3인의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1인의 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 11.2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로부터 중재인을 지명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하였거나 사무국이 정한 기간 이내에 중재인을 지명하지 못 하는 경우, 중재법원장이 대신하여 중재인을 선정한다.
- 11.3 당사자 간에 세 번째 중재인 선정 방법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 바가 없거나 그렇게 합의한 방법을 통해서도 당사자 혹은 사무국이 정한 기간 이내에 세 번째 중재인이 선정되지 않는 경우, 의장으로 활동할 세 번째 중재인은 중재법원장이 선정한다.

12 다수 당사자에 의한 중재인 선정

- 12.1 중재 관련 당사자가 3인 이상이며 단독중재인이 선정되어야 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단독중재인을 공동 지명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 지명이 중재절차 개시일로부터 28일 이내 또는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하였거나 사무국이 정한 기간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중재법원장이 단독중재인을 선정한다.
- 12.2 중재 관련 당사자가 3인 이상이며 3인의 중재인이 선정되어야 하는 경우, 신청인(들)은 1인 중재인을 공동으로 지명하고 피신청인(들)은 1인 중재인을 공동으로 지명한다. 의장 중재인으로 활동할 세 번째 중재인은 제11.3조에 따라 선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 지명이 중재절차 개시일로부터 28일 이내 또는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하였거나 사무국이 정한 기간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중재법원장이 중재인 3인 모두 선정하고 그 중 1인을 의장 중재인으로 지정한다.

13 중재인 자격

- 13.1 이 규칙에 의하여 선정된 모든 중재인은 당사자로부터 지명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나 독립적이고 공정하여야 한다.
- 13.2 중재법원장은 이 규칙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인 자격 요건 등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련된 모든 고려사항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
- 13.3 중재법원장은 중재인이 심리 대상 중재사건의 성격에 적절한 방식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활동 가능성(availability)을 갖고 있는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 13.4 중재인으로 지명된 자는 중재법원장에 의해서 중재인으로 선정되기 전에 자신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하여 타당한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당사자들과 사무국에 고지하여야 한다.
- 13.5 중재인은 중재 진행 중에 자신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타당한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발견되거나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과 다른 중재인들 및 사무국에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 13.6 모든 당사자와 그 대리인은 중재인 또는 당사자 지명 중재인 후보자 중 어느 누구와도 편면적 의사소통(ex parte communication)을 해서는 안 된다. 단, 중재인 후보자에게 관련 논쟁의 전반적인 성격과 예상되는 절차에 관하여 통지하거나, 중재인 후보자의 자격이나 중재인으로서의 활동 가능성 또는 당사자들과의 관계에서의 독립성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혹은 당사자들이나 일방당사자가 지명한 중재인들이 세 번째 중재인을 선정하려는 상황에서 중재인 후보자들의 의장 중재인으로서의 적합성에 관하여 논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모든 당사자와 그 대리인은 의장 중재인 후보자 중 어느 누구와도 편면적 의사소통을 해서는 안 된다.

14 중재인 기피

- 14.1 당사자들은 공정성과 독립성에 타당한 의심을 야기하는 사정이 있는 중재인이나 당사자들이 합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중재인은 기피할 수 있다.
- 14.2 어느 당사자든지 자신이 지명한 중재인을 기피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중재인이 선정된 이후에 알게 된 사실만을 근거로 삼을 수 있다.

15 중재인 기피신청서

- 15.1 중재인을 기피하려는 당사자는 해당 중재인의 선정 사실을 통지 받은 날 이후 14일 이내 또는 제14.1조나 제14.2조에 언급된 사정을 알게 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제15.2조의 요건에 따라 중재인 기피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5.2 중재인 기피신청서에는 기피 사유가 기재되어야 하며, 사무국에 접수된 일자를 그 제출일자로 간주한다. 중재인을 기피하려는 당사자는 중재인 기피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함과 동시에 타방당사자를 비롯하여 기피 대상이 된 중재인과 중재판정부의 나머지 중재인들(중재판정부 구성 전에는 중재인으로 선정된 자)에게도 중재인 기피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송달 방법과 일자를 명시하여 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 15.3 중재인을 기피하려는 당사자는 적용되는 수수료 일람표(Schedule of Fees)에 나온 대로 이 규칙에 따른 기피 신청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만약 중재인을 기피하려는 당사자가 사무국이 정한 기한 이내에 기피요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해당 기피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 15.4 사무국은 제15.2조에 의한 중재인 기피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중재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기피 대상이 된 중재인은 사무국이 본 조에 의한 중재절차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중재법원이 제16조에 따라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때까지 중재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계속 유지한다.
- 15.5 일방당사자가 중재인을 기피하는 경우, 타방당사자도 이에 대하여 동의할 수 있고 중재법원은 모든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기피 대상이 된 중재인을 해임하여야 한다. 기피 대상이 된 중재인은 자진 사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둘 중 어느 경우도 기피 이유의 타당성이 인정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15.6 만약 중재인이 제15.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사임하면, 보궐 중재인을 선정하되 교체된 중재인에게 적용된 지명·선정 절차에 따른다. 그러한 절차는 기피 대상이 된 중재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방당사자가 중재인 지명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보궐 중재인 지명과 선정을 위한 기한은 기피신청 당사자의 타방당사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날 또는 기피 대상이 된 중재인이 사임한 날부터 기산한다.

16 중재인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 16.1 제15조에 의한 중재인 기피신청서가 접수된 날의 익일부터 7일 이내에 기피신청 당사자의 타방당사자가 해당 신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중재인이 자진 사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재법원이 그 해임 여부를 결정한다. 중재법원은 당사자들과 기피신청된 중재인 및 중재판정부의 다른 중재인들 (또는 중재판정부가 아직 구성되기 전이라면 선정된 중재인)에게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을 물을 수 있고 그런 의견을 듣기 위한 일정을 세운다.
- 16.2 중재법원은 중재인 기피신청을 수락할 경우 해당 중재인을 해임하여야 하며, 보궐 중재인을 선정하되 교체된 중재인에게 적용된 지명·선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 보궐 중재인 지명과 선정을 위한 기한은 사무국이 중재법원의 중재인 기피신청 수락 결정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한 날부터 기산한다.
- 16.3 중재법원이 중재인 기피신청을 각하할 경우, 해당 중재인은 중재를 계속 진행한다.
- 16.4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중재법원이 제16조에 따라 중재인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서는 이유가 적시되어 있어야 하며 사무국이 당사자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중재인 기피신청에 대하여 중재법원이 내린 결정은 최종적이며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

17 중재인 교체

- 17.1 이 규칙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절차 진행 중에 중재인이 사망하거나 사임하거나 선정이 철회되거나 또는 해임되는 경우, 보궐 중재인을 선정하되 교체된 중재인에게 적용된 지명·선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
- 17.2 만약 중재인이 이 규칙에 따라 또는 지정된 기한 내에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수행하지 못하거나, 혹은 법적 또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와 제17.1조에 규정된 중재인 기피·교체 절차가 적용된다.
- 17.3 만약 어느 중재인이든 (i) 이 규칙에 따라 또는 지정된 기한 내에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수행하지 못하거나, (ii) 법적 또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혹은 (iii) 상당한 주의

및/또는 공정하고 경제적이며 신속하고 최종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지 않은 채 중재를 진행하거나 중재에 참여한다면, 중재법원장은 자신의 결정과 재량으로 그러한 중재인을 해임할 수 있다. 단, 중재법원장은 본 조에 따라 중재인 해임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을 비롯하여 해임 대상 중재인을 포함한 중재판정부의 중재인들(중재판정부 구성 전에는 중재인으로 선정된 자)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8 중재인 교체 시 심리절차 반복 여부

만약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단독중재인이나 의장 중재인이 교체되는 경우,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이전에 진행된 심리절차는 모두 반복되어야 한다. 그 외 다른 중재인이 교체된 경우에는 이전에 진행된 심리절차의 반복 여부에 대하여 중재판정부가 재량으로 결정하되 사전에 당사자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만약 중재판정부가 임시판정 또는 부분판정을 이미 내린 상황이라면 그러한 판정에만 관련된 심리절차는 반복될 수 없으며 해당 판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19 중재 진행

- 19.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공정하고 경제적이며 신속하고 최종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방법으로 중재를 진행하여야 한다.
- 19.2 중재판정부는 모든 증거의 관련성과 중대성 및 증거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그 평가 과정에서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어떤 법의 증거원칙도 판단 근거로 삼아야 할 필요가 없다.
- 19.3 중재판정부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구성되어야 하며 그러자마자 당사자들과 직접 대면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예비절차회의를 개최하여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중재절차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19.4 중재판정부는 절차 진행 순서를 결정하고 절차분리를 지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반복되거나 회부된 사건과 무관한 증언이나 기타 증거를 배제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에게 제출 내용이나 논의의 초점을 판정 결과에 따라 해당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결 처리할 수 있는 쟁점에 맞추도록 지시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 19.5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의장 중재인은 절차적 결정을 단독으로 내릴 수 있으며, 중재판정부는 그렇게 결정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 19.6 중재판정부 및/또는 사무국에 제출된 일방당사자의 모든 진술, 서류 또는 기타 정보는 타방당사자에게도 제공되어야 한다.
- 19.7 중재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중재법원장은 당사자들과 중재판정부에게 회부된 사건에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회의는 직접 대면하는 방식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진행될 수 있다.

20 당사자의 서면 제출

- 20.1 중재판정부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서면 제출은 본 조에 규정된 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 20.2 신청인은 제3.2조에 따라 준비서면을 이미 제출하지 않은 이상 중재판정부가 정한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준비서면을 피신청인과 중재판정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 a. 청구를 뒷받침하는 사실에 관한 진술
 - b. 청구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 혹은 주장
 - c. 청구 취지와 산정 가능한 모든 청구금액
- 20.3 피신청인은 제4.2조에 따라 답변서면을 이미 제출하지 않은 이상 중재판정부가 정한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답변서면을 신청인과 중재판정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 a. 준비서면에 대한 항변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관한 진술
 - b. 그러한 항변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 혹은 주장
 - c. 답변 취지
- 20.4 피신청인이 반대청구 준비서면을 작성한 경우, 신청인은 중재판정부가 정한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반대청구에 대한 반박서면을 피신청인과 중재판정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 a. 반대청구 준비서면에 대한 항변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관한 진술
 - b. 그러한 항변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 혹은 주장
 - c. 반박 취지
- 20.5 일방당사자는 청구, 반대청구 또는 기타 서면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단, 중재판정부가 그러한 수정으로 인한 절차 지연, 타방당사자의 권리 침해 또는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청구, 반대청구의 수정이 중재합의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수정될 수 없다.
- 20.6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에게 추가적인 서면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추가 서면 제출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20.7 일방당사자는 본 조에 언급된 어떤 서면을 제출하든지 이전에 어느 당사자도 제시한 적이 없는 근거 서류 일체를 사본으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20.8 만약 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이내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못한다면,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 종료 명령 또는 다른 적절한 지시를 내릴 수 있다.
- 20.9 피신청인이 답변서면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혹은 어느 때든지 일방당사자가 중재판정부가 지정한 방법대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21 중재지

- 21.1 중재지는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다.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회부된 사건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중재지를 결정한다.
- 21.2 중재판정부는 편리하거나 적합하게 보이는 어떤 장소에서든 신속하거나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방법을 이용하여 심리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2 중재언어

- 22.1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중재판정부가 결정한다.
- 22.2 일방당사자가 어떤 문서를 중재언어(들) 이외의 언어로 작성한 경우, 중재판정부 또는 사무국(중재판정부 구성 전)은 그러한 당사자에게 해당 문서를 중재판정부 또는 사무국이 정한 언어로 번역하여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23 당사자의 대리인

- 23.1 모든 당사자는 변호인 또는 기타 수권대리인의 대리를 받을 수 있다. 사무국 및/또는 중재판정부는 어느 대리인에게든지 수권된 자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요구할 수 있다.
- 23.2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후에 일방당사자의 대리인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 해당 당사자는 그 사실을 즉시 서면으로 타방당사자와 중재판정부 그리고 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24 심리

- 24.1 당사자들이 서면만으로 중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혹은 이 규칙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판정부는 일방당사자의 요청이나 자체적인 결정에 따라 관할권 관련 쟁점을 포함한 분쟁 본안에 관한 증거 제출 및/또는 구두변론을 위한 심리를 개최하여야 한다.
- 24.2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회의 또는 심리를 개최할 날짜, 시간, 장소를 정하여 당사자들에게 합리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24.3 만약 어느 당사자든지 충분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회의 또는 심리에 불출석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시점까지 제출된 서면과 증거를 근거로 하여 중재를 진행하여 판정할 수 있다.
- 24.4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모든 회의와 심리는 비공개로 하며 중재절차에 관련된 녹음물, 속기록 또는 서류는 모두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25 증인

- 25.1 중재판정부는 심리에 앞서 당사자들에게 신청하려는 증인(전문가 증인 포함)의 신원, 증언요지 그리고 증언과 쟁점 간의 관련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25.2 심리에서 구두증언을 하려는 증인에 대하여 중재판정부는 출석을 허용하거나 거부하거나 혹은 제한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 25.3 구두증언을 하는 모든 증인은 각 당사자와 그 대리인 그리고 중재판정부의 신문을 받을 수 있으며 신문 방법은 중재판정부가 결정한다.
- 25.4 중재판정부는 증인의 증언 내용을 서명진술서, 선서진술서 또는 기타 기록양식으로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 25.2조를 전제로 어느 당사자이든지 그러한 증인이 구두심리에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그러한 증인이 구두심리에 불출석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증인의 서면 증언을 어느 정도로 고려할 것인지에 대하여 재량을 갖고 참작하지 않거나 혹은 완전히 배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 25.5 일방당사자나 그 대리인은 채택된 증인이든 잠재적 증인이든 (해당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어떤 증인과도 심리기일 이전에 면담하는 것이 허용된다.

26 중재판정부가 지정한 전문가

- 26.1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중재판정부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이 있다.
 - a. 당사자들과 협의한 후에 특정 쟁점에 관한 보고를 담당할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다.
 - b. 일방당사자에게 제26.1(a)에 따라 선정된 모든 전문가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혹은 그러한 전문가가 관련 서류, 상품 또는 기타 재산을 조사할 수 있게 접근 권한을 부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26.2 제26.1(a)에 따라 선정된 전문가는 누구든지 중재판정부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그러한 보고서를 수령하면 그

사본을 각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당사자들에게 해당 보고서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26.3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제26.1(a)에 따라 선정된 전문가는 중재판정부의 자체적인 판단이나 일방당사자가 요청에 따라 자신의 서면 보고서가 송달된 후에 심리에 참석하도록 한다. 당사자들에게는 그러한 전문가에게 심리 중에 신문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27 중재판정부의 기타 권한

당사자들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중재판정부는 이 규칙에 명시된 권한 이외에 중재에 적용되는 강행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 a. 어떤 계약에 대하여서든 해당 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수정하거나 정정하도록 명령하는 일
- b. 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이나 중재판정부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어떤 기한이든지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일
- c. 중재판정부의 필요나 편의에 따라 심문하는 일
- d. 당사자들에게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어떤 재산이나 물품이든지 검증이 가능하게 하도록 명령하는 일
- e. 분쟁목적물이거나 분쟁목적물을 구성하는 어떤 재산이나 물품에 대하여서든 보존, 보관, 매각 또는 처분을 명령하는 일
- f. 일방당사자가 소지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어떤 서류든지 중재판정부가 보기에 회부된 사건과 관련되어 있고 판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그러한 서류를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당사자에게 그 사본을 중재판정부와 타방당사자에게 제출·제공하도록 명령하는 일
- g. 미납된 중재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이나 중재판정을 내리는 일
- h. 어느 당사자나 누구에게든지 선서진술서나 기타 양식으로 증거를 제출하도록 지시하는 일

- i. 일방당사자에 의해서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자산이 소멸되어 중재판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느 당사자에게든 특정 조치를 이행하거나 자제하도록 지시하는 일
- j. 어느 당사자에게든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법률비용 또는 기타 비용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일.
- k. 어느 당사자에게든 분쟁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일
- l. 어느 당사자가 이 규칙이나 중재판정부의 명령, 지시 또는 부분판정을 위반 또는 거부하거나 혹은 회의나 심리에 불출석 또는 출석 거부를 하더라도 중재를 계속 진행하고 그러한 불이행이나 거부를 행한 당사자에게 적절한 징계를 내리는 일
- m. 일방당사자의 서면에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도 제기되지 않았던 쟁점이라도 이에 관하여 타방당사자가 명확한 통지를 받아 답변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을 경우, 적절한 범위 내에서 그러한 쟁점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는 일
- n. 중재절차에 적용될 법을 정하는 일
- o.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 특권 등 기타 특권 신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일

28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 28.1 만약 어느 당사자든지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중재합의의 존부나 효력 또는 SIAC의 중재사건 관리권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사무국은 그러한 이의가 중재법원에 회부되어야 하는지 판단한다. 사무국이 중재법원 회부 결정을 내릴 경우, 중재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해당 중재절차가 계속 진행되어도 되는지 판단한다. 만약 중재법원이 진행 불가라고 결정하면, 해당 중재절차는 종료된다. 사무국 또는 중재법원이 중재절차 계속 진행하라는 취지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중재판정부는 자체적인 관할권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 받지 않는다.
- 28.2 중재판정부는 중재합의 존부나 효력 또는 범위 관련된 이의를 포함하여 그 자체의 관할권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중재합의문은 계약의 나머지 조건들과는 독립된 조항으로 취급된다. 즉, 중재판정부가 어떤 계약에 대하여 무효라고 결정하더라도 해당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중재합의문까지 법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그 계약이 존속하지 않거나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주장으로 인하여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소멸되는 것도 아니다.

- 28.3 일방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 a. 중재판정부에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은 늦어도 답변서면 또는 반대청구에 대한 반박서면 제출일 때까지는 제기되어야 한다.
 - b. 중재판정부가 관할권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는 주장은 그 사유가 중재절차 중에 거론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본 조에 규정된 기한을 초과하여 제기된 이의도 그 지연 사유가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다. 어느 당사자도 중재인을 지명하였거나 중재인 지명 과정에 참여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본 조에 의한 이의신청권을 박탈 당하지 않는다.

- 28.4 중재판정부는 제28.3조에 의한 이의를 선결문제로서 판단하거나 본안에 대한 중재판정문에서 판단할 수 있다.
- 28.5 일방당사자는 이 규칙과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계의 목적으로 청구 또는 항변을 원용할 수도 있다.

29 청구와 항변의 조기 기각

- 29.1 일방당사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중재판정부에 청구 또는 항변의 조기 기각을 신청할 수 있다.
- a. 청구 또는 항변에 법적 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 b. 청구 또는 항변이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을 벗어나 있음이 명백한 경우
- 29.2 제29.1조에 따른 청구 또는 항변 조기 기각 신청서에는 해당 신청 내용을 뒷받침하는 사실과 법적 근거가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조기 기각 신청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에 해당 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그 사본을 타방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그 송달 방법과 일자를

명시하여 중재판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 29.3 중재판정부는 제29.1조에 따른 청구 또는 항변 조기 기각 신청에 대한 진행 여부를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신청이 진행되기로 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에게 각각 자신의 주장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후에 제29.1조에 따른 조기 기각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할지 결정해야 한다.
- 29.4 중재판정부는 조기 기각 신청을 진행하기로 승인한 경우 해당 신청에 대하여 명령 또는 판정을 내려야 하며 결정이유는 요약된 형식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명령 또는 판정은 예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무국이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이상 해당 신청서 접수일 이후로부터 60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30 임시처분 및 긴급임시처분

- 30.1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가처분이나 기타 임시처분을 명하는 명령 또는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임시처분을 요청한 당사자에게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30.2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긴급임시처분이 필요한 경우, 일방당사자는 별지 1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긴급임시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 30.3 일방당사자가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 또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그 이후에 사법기관에 요청하는 임시적 처분은 이 규칙과 상충되지 아니한다.

31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 우호적 중재인(amicable compositeur), 형평과 선(ex aequo et bono)

- 31.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분쟁의 실체에 적용되도록 지정한 법이나 법규범을 적용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그러한 법을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여기는 법이나 법규범을 적용한다.
- 31.2 중재판정부가 우호적 중재인(amicable compositeur)으로서 또는 형평과 선(ex aequo et bono)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것은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에 국한한다.

- 31.3 중재판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당사자 간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상관습을 고려하여야 한다.

32 중재판정

- 32.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 협의한 후에 중재판정에서 판단할 사안들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에게 더 이상 제출할 중요 증거 또는 서면이 없다고 판단되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중재절차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이러한 중재절차 종결 선언은 당사자들과 사무국에 고지되어야 한다
- 32.2 중재판정부는 자체적인 발의에 의하여 또는 일방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중재판정을 내리기 전에 중재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 이러한 중재절차 재개 결정은 당사자들과 사무국에 고지되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재개한 어떤 절차든지 제32.1조에 따라 종결해야 한다.
- 32.3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해당 판정문의 초안을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무국이 기한을 연장하거나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판정문 초안 제출 기한은 중재판정부의 중재절차 종료 선언일 이후 45일 이내이다. 사무국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중재판정문의 형식에 대하여 수정 제안을 하거나 중재판정부의 판단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실제적 쟁점에 대하여도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사무국이 중재판정문의 형식을 승인하기 전까지는 어떤 중재판정도 내릴 수 없다.
- 32.4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당사자들이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문에는 판정 이유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32.5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중재판정부는 쟁점별로 각기 다른 시기에 개별적인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 32.6 만약 어느 중재인이든지 정당한 기회를 부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을 내리는 데 협력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중재인들이 중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머지 중재인들은 그러한 임무 불이행 또는 수행 거부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중재인을 비롯하여 사무국과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중재인 1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중재를 계속 진행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중재인들은 여러 고려요소 중에서도 특히, 해당 중재절차가 진행된 단계를 비롯하여 자신의 임무를 불이행 또는 수행 거부한

중재인의 해명 내용과 중재인 1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중재가 계속 진행될 경우에 중재판정의 집행력에 발생할 영향(그러한 영향이 존재할 경우)을 감안할 수 있다. 중재인 1인이 부재한 상태에서도 중재를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되어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 나머지 중재인들은 해당 중재판정문에 그 이유를 실시하여야 한다.

- 32.7 중재인이 복수인 경우,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은 과반수 결의에 따른다. 과반수 결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장중재인이 단독으로 중재판정을 내린다.
- 32.8 중재판정문은 사무국에 송부되어야 하며, 사무국은 중재비용 전액 납입을 전제로 중재판정문의 인증사본을 각 당사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32.9 중재판정부는 중재 대상인 금액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한 이율 또는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이율로 단리 또는 복리의 이자가 지급되도록 판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자는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여기는 기간까지 지급되어야 한다.
- 32.10 만일 당사자들이 화해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요청이 있다면 해당 합의사항을 기재한 화해중재판정문을 작성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화해중재판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무국에 화해 사실을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중재비용이 전액 납입되었음을 전제로 중재판정부는 임무를 종료하고 중재절차도 종결된다.
- 32.11 제33조 및 별지 1에 의거, 당사자들은 이 규칙에 따른 중재에 합의함으로써 어떤 중재판정이든 그 선고일로부터 최종적이며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이 있다는 데 동의하며 판정을 받은 대로 즉시 지체 없이 이행하기로 약속한다. 당사자들은 또한, 어떤 중재판정에 대하여서도 어느 국가의 법원이나 기타 사법기관에든 어떤 형식의 항고나 재심 청구 또는 구제 청구를 하지 않기로 동의하며 이는 취소불가능하다. 단, 그러한 권리 포기기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 32.12 SIAC는 어떤 중재판정문이든 당사자들과 중재판정부의 동의를 받아 당사자들의 성명이나 기타 인적 정보를 삭제하여 공표할 수 있다.

33 중재판정의 정정, 해석 및 추가

- 33.1 일방당사자는 중재판정문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사무국과 타방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중재판정문의 오기, 오산, 오타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오류를 정정하도록 중재판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정정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오류를 정정하여야 한다. 기존 중재판정문에 정정이 되었든 별도의 각서로 작성된 정정 사항이든 모두 기존 중재판정문의 일부를 구성한다.
- 33.2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 선고한 후 30일 이내에 제33.1조에 언급된 오류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 33.3 일방당사자는 중재판정문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사무국과 타방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중재절차에서는 제시되었으나 중재판정에서 판단되지 않은 청구에 대하여 추가 판정을 내리도록 중재판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추가 판정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후 45일 이내에 추가 판정을 내려야 한다.
- 33.4 일방당사자는 중재판정문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사무국과 타방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당 중재판정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도록 중재판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해석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후 4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석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해당 중재판정문의 일부를 구성한다.
- 33.5 사무국은 이 규칙에 의한 중재판정문의 정정이나 해석 또는 추가 판정을 위한 기한을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 33.6 제32조에 규정된 사항들은 필요하거나 적절한 수정을 거쳐 중재판정의 정정, 해석 및 추가 시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34 수수료 및 예납금

- 34.1 중재판정부 수수료와 SIAC 수수료는 중재절차 개시일에 시행 중인 수수료 일람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단, 중재판정부 수수료는 당사자들이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 34.2 사무국은 중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납입되어야 할 예납금 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사무국이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예납금의 50%는 신청인이 납입하고 나머지 50%는 피신청인이 납입해야 한다. 사무국은 청구를 위한 예납금 금액과 반대청구를 위한 예납금 금액을 각기 다르게 확정할 수 있다.
- 34.3 청구금액 또는 반대청구금액이 지급 기일에도 산정되지 않는 경우, 사무국은 분쟁의 성격과 관련 정황을 근거로 중재비용을 임시로 추산하여야 한다. 이러한 추산액은 추후 확인되는 정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34.4 사무국은 당사자들에게 중재 비용의 예납금을 때때로 추가 요청할 수 있다.
- 34.5 당사자들은 중재비용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리고 각자 예납할 책임을 진다. 만약 일방당사자가 예납금 중 자신의 부담부분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타방당사자가 예납금 전액을 납입할 수 있다.
- 34.6 만일 일방당사자가 사무국이 지시한 예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 중재판정부는 중재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고, 사무국은 SIAC의 중재 관리를 전부 또는 일부 중단시킬 수 있다.
 - 사무국은 (중재판정부가 이미 구성되어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와 협의한 후에 당사자들이 다른 절차를 통하여 동일한 청구 또는 반대청구를 다시 제기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당 청구 또는 반대청구가 철회된 것으로 간주하는 기한을 설정하여 당사자들에게 통보할 수 있다.
- 34.7 중재비용은 모든 경우에 중재절차가 종결될 때 사무국이 최종 결정한다. 청구금액 또는 반대청구금액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 사무국은 제35조에 규정된 대로 재량에 따라 중재비용을 최종 결정한다. 중재비용 결정 과정에서 사무국은 해당 중재절차의 종결 시점에 진행된 단계 등 관련 사정을 모두 참작해야 한다. 만약 최종 결정된 중재비용이 납입된 예납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은 당사자 간에 합의한 비율대로 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예납금이 지불된 비율에 따라 반환되어야 한다.
- 34.8 중재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예납금은 모두 SIAC에 납입 및 보관되어야

한다. 예납금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이자는 SIAC가 보유한다.

- 34.9 예외적인 경우, 사무국은 당사자들에게 SIAC의 중재관리수수료의 일부로 수수료 일람표에 적시된 것에 추가하여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5 중재비용

- 35.1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 시 중재비용의 총 액수를 명시하고 당사자 간에 중재비용 분담 비율도 결정하여야 한다.
- 35.2 “중재비용(costs of the arbitration)”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된다.
- a. 중재판정부 수수료 및 경비와 긴급중재인 수수료와 경비(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 b. SIAC의 관리 수수료 및 경비
 - c. 중재판정부가 선정한 전문가를 위한 비용 및 중재판정부의 합리적인 필요에 따른 기타 지원을 위한 경비

36 중재판정부 수수료 및 경비

- 36.1 중재판정부 수수료는 사무국이 중재절차 종결 당시에 진행된 단계에 따라 적용되는 수수료 일람표에 근거하여 혹은 제34.1조에 따라 당사자들이 합의한 방법(그러한 방법이 있는 경우)으로 확정한다.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사무국은 수수료 일람표에 규정된 금액에 더하여 추가 수수료를 허용할 수도 있다.
- 36.2 중재판정부의 필요에 따른 정당한 지출 및 기타 경비는 적용되는 실무지침에 따라 변제된다.

37 당사자의 법률비용 및 기타 비용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 시 일방당사자의 법률비용 및 기타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타방당사자에게 부담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38 면책

- 38.1 모든 중재인(긴급중재인 포함)을 비롯하여 중재판정부가 선정한 모든 사람(행정서기와 전문가 포함)과 중재법원장 및 중재법원 위원들 그리고 SIAC의 모든 이사와 임직원은, SIAC가 이 규칙에 따라 관리한 모든 중재와 관련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과실,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다.
- 38.2 모든 중재인(긴급중재인 포함)을 비롯하여 중재판정부가 선정한 모든 사람(행정서기와 전문가 포함)과 중재법원장 및 중재법원 위원들 그리고 SIAC의 모든 이사와 임직원은, SIAC가 이 규칙에 따라 관리한 모든 중재와 관련하여 어떤 진술의무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중재법원장 및 중재법원 위원들을 비롯하여 SIAC의 모든 이사와 임직원과 긴급중재인을 포함한 모든 중재인 그리고 행정서기와 전문가 등 중재판정부가 선정한 모든 사람은, 어느 당사자도 SIAC가 이 규칙에 따라 관리한 중재와 관련된 어떤 법적 절차에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없다.

39 비밀유지

- 39.1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모든 당사자와 중재인(긴급중재인 포함) 및 중재판정부가 선정한 모든 사람(행정서기와 전문가 포함)은 중재절차 및 중재판정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항상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중재판정부의 상의 및 논의한 내용 역시 모두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 39.2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어느 일방당사자나 중재인(긴급중재인 포함) 또는 중재판정부가 선정한 어떤 사람(행정서기와 전문가 포함)도 당사자 간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중재절차와 관련된 어떤 사안도 제 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단,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어느 국가의 관할 법원에든지 중재판정 집행 또는 취소 신청을 하려는 경우
 - 관할 법원의 명령이나 소환장에 의거한 경우
 - 법적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적 청구를 제기하려는 경우

- d. 공개를 하는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국가의 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서나 혹은 규제기관 또는 기타 당국의 요청이나 요구에 응하기 위한 경우
 - e.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적절히 통지하여 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중재판정부가 내린 명령에 의거한 경우
 - f.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경우
- 39.3 제39.1조의 “중재절차와 관련된 사안(matters relating to the proceedings)”에는 중재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자체를 비롯하여 중재절차에서 제시된 각종 변론과 증거 및 기타 자료와 각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 일체 또는 중재판정이 포함된다. 단, 일반에 공개되어 있는 사항은 제외된다.
- 39.4 만약 일방당사자가 본 조를 위반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해당 당사자에게 징계를 받거나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 또는 판정을 내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40 중재법원장과 중재법원 및 사무국의 결정

- 40.1 이 규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와 관련된 어떤 사안에 관하여서든 중재법원장과 중재법원 및 사무국이 내린 결정은 최종적이며 당사자들과 중재판정부를 구속한다. 중재법원장과 중재법원 및 사무국은 중재법원이 달리 정하거나 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이유를 적시할 필요가 없다. 당사자들은 중재법원의 상의 및 논의 내용은 모두 비밀로 유지하는 데 동의한다.
- 40.2 제16.1조와 제28.1조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들은 중재법원장과 중재법원 및 사무국의 어떤 결정에 대하여서도 어느 국가의 법원이나 기타 사법기관에든 어떤 형식의 항고 또는 재심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한다.

41 일반 조항

- 41.1 어느 당사자든지 이 규칙의 규정이나 중재절차에 적용되는 기타 규칙의 규정, 중재판정부의 지시사항 또는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 진행에 관련된 중재합의문의 요건이 준수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익을 제기하지 않은 채 중재가 계속 진행되도록 한 경우에는 자신의 이익신청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41.2 중재법원장과 중재법원 및 사무국 그리고 중재판정부는 이 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어떤 사안을 다루든지 각기 이 규칙의 정신에 입각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중재절차가 공정하고 경제적이며 신속하게 종결되고 중재판정의 집행력이 보장될 수 있게 해야 한다.
- 41.3 만일에 이 규칙의 영어본과 기타 언어로 발행된 번역본이 서로 불일치하거나 모순되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긴급중재인

1. 긴급임시처분이 필요한 당사자는 중재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혹은 그 이후부터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이전 기간에 긴급임시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임시처분을 신청하는 당사자(이하 “긴급처분 신청 당사자”)는 해당 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함과 동시에 그 사본을 모든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긴급임시처분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a. 신청하는 처분의 성격
 - b. 긴급처분 신청 당사자가 해당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 c. 다른 모든 당사자들에게 신청서 사본이 제공되었음을 확인하여주는 진술, 또는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신청서 사본을 제공하거나 이에 관한 통지를 하기 위하여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이행한 관련 조치에 설명
2. 긴급임시처분 신청서 제출 시에는 별지 1에 따른 절차 진행을 위하여 이 규칙에 따른 관리 수수료(반환 불가)를 비롯하여 긴급중재인의 수수료와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예납금이 함께 납입되어야 한다. 적절한 경우, 사무국은 긴급처분 신청 당사자가 납입하여야 할 예납금을 증액할 수 있다. 만약 사무국이 정한 기한까지 추가 예납금이 납입되지 않으면, 해당 신청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3. 중재법원장은 SIAC가 긴급임시처분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신청서가 사무국에 접수되어 관리 수수료와 예납금이 납입된 후 1일 이내에 긴급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4. 당사자들이 합의를 통해 중재지를 결정하면, 해당 중재지가 긴급임시처분을 위한 중재지가 된다.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싱가포르를 긴급임시처분을 위한 중재지로 하되, 제21.1조에 의한 중재판정부의 중재지 결정권은 침해되지 않는다.
5. 긴급중재인 후보자는 선정을 수락하기 전에 자신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하여 타당한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사무국에 고지하여야

한다. 긴급중재인 선정에 대한 이의는 긴급중재인이 선정된 사실이 사무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알려지고 긴급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타당한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사정이 밝혀진 후 2 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6.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긴급중재인은 해당 분쟁과 관련된 이후의 중재절차에서는 중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7. 긴급중재인은 선정된 후 2 일 이내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긴급임시처분 신청에 대한 심의 일정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한 일정에는 모든 당사자가 각자의 주장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심리절차도 잡혀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하는 대신 전화회의나 화상회의, 서면 제출 등을 통해 심리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허용된다. 긴급중재인은 자신의 관할권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권한 등 이 규칙에 따라 중재판정부에게 부여된 권한이 있으며, 긴급중재인의 이러한 권한은 중재판정부가 결정할 사항을 침해하지 않는다.
8. 긴급중재인은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한 심리절차 중이나 전화회의나 화상회의 또는 서면 제출 등을 통한 심리절차 중에 내릴 수 있는 사전명령을 포함하여 자신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어떤 임시처분도 명령 또는 판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긴급중재인은 자신이 내린 명령이나 판정의 결정이유를 요약하여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긴급중재인은 사전명령이나 임시명령 또는 임시판정을 정정하거나 무효 처리할 수 있다.
9. 예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무국이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한, 긴급중재인은 선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시명령 또는 임시판정을 내려야 한다. 긴급중재인은 사무국이 임시명령문 또는 임시판정문의 형식을 승인하기 전까지는 어떤 임시명령이나 임시판정도 내릴 수 없다.
10. 긴급중재인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이후에는 아무런 권한도 갖지 않게 된다. 중재판정부는 긴급중재인의 임시명령 또는 임시판정(긴급중재인이 자신의 관할권에 대하여 내린 결정을 포함)을 긴급중재인이 제시한 결정이유에 구속되지 않고 재심사, 정정 또는 무효 처리할 수 있다. 긴급중재인이 내린 임시명령 또는 임시판정은 선고일 이후 90일 이내에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않거나 혹은 중재판정부가 최종판정을 내리는 경우 또는 해당 신청이 철회될 경우 구속력을 잃는다.
11. 긴급중재인은 임시명령이나 임시판정에 긴급처분 신청 당사자가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12. 당사자들은 별지 1에 따른 명령 또는 판정이 선고됨과 동시에 자신들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다는 데 동의하며 명령 또는 판정을 받은 대로 즉시 지체 없이 이행하기로 약속한다. 당사자들은 또한, 긴급중재인이 내린 어떤 중재판정에 대하여서도 어느 국가의 법원이나 기타 사법기관에든 어떤 형식의 항고나 재심 청구 또는 구제 청구도 하지 않기로 동의하며 이는 취소 불가능하다. 단, 그러한 권리 포기가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13. 별지 1에 따른 신청과 관련된 비용 분배는 긴급중재인이 우선적으로 결정하되, 최종적인 분배 결정권은 중재판정부에 있다.
14. 이 규칙은 신청된 절차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별지 1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 규칙의 적절한 적용 방식에 대하여선 긴급중재인이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항고, 재심 청구 또는 구제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무국은 제30.2조와 별지1조에 따라 개시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이 규칙에 따른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수수료 일람표

(이하 모든 금액은 싱가포르 달러임)

본 수수료 일람표는 2016년 8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효력발생일 당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된 모든 중재절차에 적용된다.

접수 수수료+(반환 불가)

싱가포르 신청자	싱가포르화 2,140 달러*
해외 신청자	싱가포르화 2,000 달러

+ 접수 수수료는 SIAC가 관리하는 모든 중재에 적용되며 신청 또는 반대청구에 각기 적용됨.

* 상기 수수료에는 7%의 물품·용역 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음.

관리 수수료

아래 일람표에 기재된 방식대로 산정된 관리 수수료는 SIAC에 지급될 수 있는 최대 한도 금액으로서 SIAC가 관리하는 모든 중재에 적용된다.

분쟁금액(싱가포르 달러)	관리 수수료(싱가포르 달러)
50,000 까지	3,800
50,001 부터 100,000 까지	3,800 + 50,000 초과 금액의 2.200%
100,001 부터 500,000 까지	4,900 + 100,000 초과 금액의 1.200%
500,001 부터 1,000,000 까지	9,700 + 500,000 초과 금액의 1.000%
1,000,001 부터 2,000,000 까지	14,700 + 1,000,000 초과 금액의 0.650%
2,000,001 부터 5,000,000 까지	21,200 + 2,000,000 초과 금액의 0.320%
5,000,0001 부터 10,000,000 까지	30,800 + 5,000,000 초과 금액의 0.160%
10,000,001 부터 50,000,000 까지	38,800 + 10,000,000 초과 금액의 0.095%
50,000,001 부터 80,000,000 까지	76,800 + 50,000,000 초과 금액의 0.040%
80,000,001 부터 100,000,000 까지	88,800 + 80,000,000 초과 금액의 0.031%
100,000,000 초과	95,000

관리 수수료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되지 않는다.

- 중재 판정부의 수수료 및 경비
- 심리 진행을 위한 시설 사용료 및 지원서비스 비용(예: 중재심리실 및 실내 기기, 속기·통역 서비스)
- SIAC의 관리 비용

사무국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SIAC가 관리하는 모든 중재에 대하여서는 최소 싱가포르화 3,800달러의 관리 수수료가 부과된다.

중재인 수수료

이 규칙에 따라 중재가 진행 및 관리되는 경우, 당사자들이 제 34.1조에 따라 중재인 수수료를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각 중재인에게 지급될 수 있는 수수료는 아래 일람표에 기재된 방식대로 산정된 금액을 최대 한도로 한다.

분쟁금액(싱가포르 달러)	중재인 수수료(싱가포르 달러)
50,000 까지	6,250
50,001 부터 100,000 까지	6,250 + 50,000 초과 금액의 13.800%
100,001 부터 500,000 까지	13,150 + 100,000 초과 금액의 6.500%
500,001 부터 1,000,000 까지	39,150 + 500,000 초과 금액의 4.850%
1,000,001 부터 2,000,000 까지	63,400 + 1,000,000 초과 금액의 2.750%
2,000,001 부터 5,000,000 까지	90,900 + 2,000,000 초과 금액의 1.200%
5,000,0001 부터 10,000,000 까지	126,900 + 5,000,000 초과 금액의 0.700%
10,000,001 부터 50,000,000 까지	161,900 + 10,000,000 초과 금액의 0.300%
50,000,001 부터 80,000,000 까지	281,900 + 50,000,000 초과 금액의 0.160%
80,000,001 부터 100,000,000 까지	329,900 + 80,000,000 초과 금액의 0.075%
100,000,001 부터 500,000,000 까지	344,900 + 100,000,000 초과 금액의 0.065%
500,000,000 초과	605,000 + 500,000,000 초과 금액의 0.040% 최대 2,000,000까지

긴급임시처분 신청 수수료

제30.2조와 별지 1 에 의한 긴급임시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수수료가 발생한다.

제30.2조와 별지 1에 의한 신청서 제출 시에는 아래와 같이 수수료가 함께 납입되어야 한다

1. 긴급중재인 신청에 대한 관리 수수료(반환 불가)

싱가포르 신청자	싱가포르화 5,350 달러*
해외 신청자	싱가포르화 5,000 달러

* 상기 수수료에는 7%의 물품·용역 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음.

2. 긴급중재인 수수료 및 예납금: 긴급중재인의 수수료와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예납금은 사무국이 별지1에 따라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싱가포르화 30,000달러로 정한다. 긴급중재인 수수료는 사무국이 별지1에 따라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싱가포르화 25,000달러로 정한다.

기피신청 수수료(반환 불가)

기피신청을 제출하려는 당사자는 규칙 15.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싱가포르 신청자	싱가포르화 8,560 달러*
해외 신청자	싱가포르화 8,000 달러

* 상기 수수료에는 7%의 물품·용역 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음.

기타 수수료

중재-조정-중재 수수료

중재		싱가포르화 2,000 달러
중재-조정-중재	싱가포르 신청자	SIAC 싱가포르화 2,140 달러* + SIMC 싱가포르화 1,000 달러 = 싱가포르화 3,140 달러
	해의 신청자	SIAC 싱가포르화 2,000 달러 + SIMC 싱가포르화 1,000 달러 = 싱가포르화 3,000 달러

*SIAC 수수료에는 7%의 물품·용역 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음.

중재인 신청 수수료(반환 불가)

임의중재 사건을 담당할 중재인(들)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해당 신청 시 아래에 기재된 대로 중재인 신청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중재인 1인	중재인 2인	중재인 3인
싱가포르 신청자	싱가포르화 3,210 달러*	싱가포르화 4,280 달러*	싱가포르화 5,350 달러*
해의 신청자	싱가포르화 3,000 달러	싱가포르화 4,000 달러	싱가포르화 5,000 달러

*SIAC 수수료에는 7%의 물품·용역 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음.

법률비용 평가/산정 수수료

일반적으로 중재인은 중재절차가 종료 단계에 이르렀을 때 또는 중재절차 도중에 관련 쟁점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 일방 당사자로 인해 초래된 법률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타방당사자가 부담하도록 명령한다. 이 경우, 중재인은 대체로 지급 대상 비용을 일정 금액으로 확정한다. SIAC는 지급 대상 비용이 이와 같이 확정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나, 지급 대상 비용을 중재인이 확정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이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SIAC 사무총장에게 적정 금액을 평가/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처럼 SIAC 사무총장에게 “법률비용 평가/산정(taxation)” 업무를 요청할 경우 아래와 같이 분쟁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분쟁금액(싱가포르 달러)	법률비용 평가/산정 수수료(싱가포르 달러)
50,000 까지	5,000
50,001 - 100,000	5,000 + 50,000 초과 금액의 2%
100,001 - 250,000	6,000 + 100,000 초과 금액의 1.5%
250,001 - 500,000	8,250 + 250,000 초과 금액의 1%
500,001 - 1,000,000	10,750 + 500,000 초과 금액의 0.5%
1,000,000 초과	13,250 + 1,000,000 초과 금액의 0.25%
최대	25,000

- 상기 수수료는 법률비용 평가/산정 요청 시 납입되어야 한다.
- 상기 수수료에는 7%의 물품·용역 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상기 수수료 일람표는 2015년 8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표준중재조항

(2015년 9월 1일 기준)

국제 계약서 작성 시 권고되는 표준중재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의 존재, 효력 또는 해지 여부 등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여,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현재 시행 중인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중재규칙("SIAC 규칙")에 따라,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가 진행하는 중재에 의하여 중국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 규칙은 이 표준중재조항의 일부로 본다.

중재지는 [싱가포르]로 한다.*

중재인은 _____(인)으로 한다.**

중재에 사용될 언어는 _____(어)로 한다.

준거법

준거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계약은 _____법이 적용된다.***

* 당사자들의 선택에 따라 중재지를 적시 합니다. 만일 당사자들이 싱가포르가 아닌 다른 중재지를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싱가포르 대신 선택하고자 하는 도시와 국가명을 기입합니다. 예: [서울, 대한민국]

** 홀수 즉, 1인 혹은 3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국가명이나 관할명을 기재합니다.

Siac Model Clause

(Revised as of 1 September 2015)

In drawing up international contracts, we recommend that parties include the following arbitration clause:

Any dispute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including any question regarding its existence, validity or termination, shall be referred to and finally resolved by arbitration administered by the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SIAC”)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SIAC Rules”) for the time being in force, which rules are deemed to be incorporated by reference in this clause.

The seat of the arbitration shall be [Singapore].*

The Tribunal shall consist of _____ ** arbitrator(s).

The language of the arbitration shall be _____.

Applicable Law

Parties should also include an applicable law clause. The following is recommended:

This contract is governed by the laws of _____ .***

* *Parties should specify the seat of arbitration of their choice. If the parties wish to select an alternative seat to Singapore, please replace “[Singapore]” with the city and country of choice (e.g., “[City, Country]”).*

** *State an odd number. Either state one, or state three.*

*** *State the country or jurisdiction.*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신속절차 표준중재조항

(2015년 9월 1일 기준)

국제 계약서 작성시 권고되는 표준중재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의 존재, 효력 또는 해지 여부 등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여,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현재 시행 중인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중재규칙("SIAC 규칙")에 따라,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가 진행하는 중재에 의하여 중국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 규칙은 이 표준중재조항의 일부로 본다.

당사자들은 이 조항에 따라 개시된 모든 중재는 SIAC규칙 제5.2조에 규정된 신속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합의한다.

중재지는 [싱가포르]로 한다.*

중재판정부는 단독중재인으로 한다.

중재에 사용될 언어는 _____(어)로 한다.

[앞 페이지의 준거법 조항 권고를 보시오]

* 당사자들의 선택에 따라 중재지를 적시 합니다. 만일 당사자들이 [싱가포르]가 아닌 다른 중재지를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싱가포르 대신 선택하고자 하는 도시와 국가명을 기입합니다. 예: [서울, 대한민국]

Expedited Procedure Model Clause

(Revised as of 1 September 2015)

In drawing up international contracts, we recommend that parties include the following arbitration clause:

Any dispute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including any question regarding its existence, validity or termination, shall be referred to and finally resolved by arbitration administered by the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SIAC”)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SIAC Rules”) for the time being in force, which rules are deemed to be incorporated by reference in this clause.

The parties agree that any arbitration commenced pursuant to this clause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Expedited Procedure set out in Rule 5.2 of the SIAC Rules.

The seat of the arbitration shall be [Singapore].*

The Tribunal shall consist of one arbitrator.

The language of the arbitration shall be _____.

[See Applicable Law clause recommendation on previous page]

* *Parties should specify the seat of arbitration of their choice. If the parties wish to select an alternative seat to Singapore, please replace “[Singapore]” with the city and country of choice (e.g., “[City, Country]”).*

SIAC-SIMC 중재-조정-중재 프로토콜(이하 “AMA 프로토콜”)

(2014년 11월 5일 기준)

1. 본 AMA 프로토콜은 싱가포르 중재-조정-중재 조항 또는 기타 유사한 조항(이하 “AMA 조항”)에 따라 해결되도록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이하 “SIAC”)에 회부된 모든 분쟁 및/또는 당사자들이 AMA 프로토콜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하기로 합의한 모든 분쟁에 적용된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어떤 분쟁이든지 싱가포르 국제분쟁조정센터(이하 “SIMC”)의 조정절차 도중에 화해를 통해 해결할 경우 AMA 프로토콜에 따라 해당 분쟁을 중재합의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데 동의한다.
2. AMA 조항을 근거로 중재절차를 개시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해당 중재절차에 적용되는 중재규칙(이하 “중재규칙”)에 따라 SIAC 사무국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재규칙이라 함은 당사자들이 SIAC가 해당 중재를 관리하는 데 동의한 상황에서 (i) SIAC의 중재규칙(수시로 개정될 수 있음) 또는 (ii) UNCITRAL 중재규칙(수시로 개정될 수 있음)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
3. AMA조항에 따라 중재절차가 개시된 경우, SIAC 사무국은 중재절차 개시일로부터 4 영업일 이내 또는 당사자들이 AMA 프로토콜에 따른 조정절차에 분쟁을 회부하기로 합의한 날로부터 4 영업일 이내에 중재절차 개시 사실을 SIMC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SIAC는 SIMC에 중재신청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4. 중재판정부 구성은 중재규칙 및/또는 당사자 간 중재합의문에 의거하여 SIAC가 결정한다.
5. 중재신청서와 답변서 제출이 완료되면 중재판정부는 해당 중재절차를 유예하고 해당 사건이 SIMC의 조정절차에 회부될 수 있게 된 사실을 SIAC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SIAC 사무국은 SIMC에서 조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사건 파일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류 일체를 SIMC에 송부하여야 한다. SIMC는 해당 사건 파일을 수령하는 즉시 SIAC 사무국에 SIMC 조정규칙에 따라 조정절차가 개시되었음을(이하 “조정절차 개시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부터 SIMC의 조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중재절차의 모든 후속 단계는 유예된다.
6. SIMC의 조정절차는 SIAC 사무국이 SIMC와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개시일로부터 8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중재절차 진행 기간 산정은 조정절차 개시일에 유예되고 SIAC 사무국이 중재판정부에 조정절차 종료를 통보하는 즉시 재개된다.

7. 8주 간의 조정절차가 완료된 후(SIAC 사무국이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제외) 혹은 분쟁당사자들이 8주가 만료되기 전까지 조정을 통해 화해에 이르는 것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SIMC는 즉시 SIAC 사무국에 조정 결과(결과가 있는 경우)를 통보하여야 한다.
8. 분쟁당사자들이 조정을 통해 화해에 이르는 것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SIAC 사무국은 중재판정부에 중재절차를 재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분쟁사건의 전체 또는 부분(해당하는 경우에 따라)에 관한 중재절차는 전술한 통보일에 재개되어야 한다.
9. 분쟁당사자들이 조정을 통해 화해에 이른 경우, SIMC는 그 사실을 SIAC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당사자들이 중재판정부에 자신들의 화해 사실이 합의판정문(consent award)의 형식으로 기재되도록 요청하는 경우, 당사자들 또는 SIAC 사무국은 화해 내용을 중재판정부에 전달하여야 하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간에 합의한 조건에 따라 합의판정을 내릴 수 있다.

관련 비용

10. 본 AMA 프로토콜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려는 당사자들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든지 SIMC 조정규칙 부록 B에 명시된 대로 SIAC에 사건접수수료(반환 불가)를 납입하여야 한다.
11. AMA 조항에 따라 사건이 개시된 경우 및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분쟁을 중재절차 개시 이전에 AMA 프로토콜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기로 합의한 경우, 접수수료는 중재신청서를 제출할 때 SIAC에 납입하여야 한다. 조정절차와 관련하여 미납된 접수수료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SIMC의 조정절차에 회부할 때 SIAC에 납입하여야 한다.
12. 또한, 당사자들은 요청이 있을 경우 SIAC와 SIMC의 수수료 일람표에 따라 조정절차 관리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한 선납금(이하 “조정절차 선납금”)을 비롯하여 예상 중재비용에 대한 예납금(이하 “중재절차 선납금”)을 SIAC에 납입하여야 한다(이하 총칭하여 “예납금”). 예납금 액수는 SIAC 사무국이 SIMC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3. AMA 조항에 따라 사건이 개시된 경우 및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분쟁을 중재절차 개시 이전에 AMA 프로토콜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기로 합의한 경우, 조정절차 선납금은 SIAC이 요청한 중재절차 선납금 납입 시 함께 납입하거나 해당 사건을 SIMC의 조정절차에 회부할 때 납입하여야 한다.
14. 만일 일방당사자가 자신의 예납금 부담액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중재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누구든 일방 당사자의 부담액을 납입할 수 있다. SIAC 사무국은 예납금의 전액 또는 일부 미납 여부를 SIMC에 통보하여야 한다.
15. SIAC은 당사자들에게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서도 예납금 또는 중재절차 선납금 보유액으로 SIMC에 조정절차 선납금을 지급할 권한이 있다.

싱가포르 중재-조정-중재 조항

(2015년 9월 1일 기준)

계약의 존재, 효력 또는 해지 여부 등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여,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현재 시행 중인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규칙("SIAC 규칙")에 따라,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가 진행하는 중재에 의하여 중국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 규칙은 이 표준중재조항의 일부로 본다.

중재지는 [싱가포르]로 한다.*

중재인은 _____ (인)으로 한다.**

중재에 사용될 언어는 _____ (어)로 한다.

아울러 당사자들은 중재절차가 개시되면 해당 분쟁이 현재 시행 중인 SIAC-SIMC 중재-조정-중재 프로토콜에 따른 싱가포르 국제분쟁조정센터("SIMC")의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신의와 성실을 다하기로 합의한다. 이러한 조정절차 도중에 분쟁당사자들이 화해에 이른 경우, SIAC가 선정한 중재판정부에 그 사실이 통보되어야 하며 당사자 간에 합의한 조건에 따라 합의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

* 당사자들의 선택에 따라 중재지를 적시합니다. 만일 당사자들이 싱가포르가 아닌 다른 중재지를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싱가포르 대신 선택하고자 하는 도시와 국가명을 기입합니다. 예: [서울, 대한민국]

** 홀수 즉, 1인 혹은 3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결제정보

1. 현지 수표로 결제할 경우 싱가포르 국제 중재 센터로 지불 가능하다. 모든 수표는 아래 주소로 직접 보내야 한다.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32 Maxwell Road, #02-01
Singapore 069115
Attn: Accounts Department

2. 은행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방식으로도 결제 가능하다. (은행 수수료를 포함하여 지불 요)

수 취 인	: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은 행	: United Overseas Bank Limited
은행 지점	: Coleman Branch
은행 주소	: 1 Coleman Street, #01-14 & B1-19, The Adelphi, Singapore 179803
은행 계좌	: 302-313-540-8
Swift code	: UOVBSGSG

송금 식별의 편의를 위해, 당사자들은 송금 세부 사항(당사자 성명/사건 번호)등을 포함하여 송금하여야 한다. 예납금의 용이한 추적을 위해, 당사자들은 예납금을 송금한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송금 기록의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각 당사자는 송금업무를 진행하기 전, 싱가포르 국제 중재 센터로 최근 은행 계좌 정보를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싱가포르 달러 이외의 통화로 지불할 경우,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is page is intentionally left blank.

This page is intentionally left blank.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32 Maxwell Road #02-01

Maxwell Chambers

Singapore 069115

T +65 6221 8833

F +65 6224 1882

corpcomms@siac.org.sg

www.siac.org.sg